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12.19(당초) - 1997.12.22(수정)-----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7.12.20(당초) - 1997.12.22(수정)
 다. 상 정 일 자 : 제6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2. 23)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성종무 기획실장) ▷ 97. 12. 20 제4차 본회의

가. 제안이유

○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미달 및 초과분에 대한 가감정리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수정예산은 97. 12. 19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중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 3,1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지 방 세	△ 891	필수 경비	838
세외 수입	△ 253	경상사업비	118
조정교부금	1,573	물품구입비	58
보 조 금	2,756	투자사업비	3,415
		예 비 비	△39
		예산 절감	△1,205

○ 특별회계 ▷ 1,746백만원(의보 1,215, 주차장 531) 여타 특별회계 규모 변동 없음

3.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율(%)
총 계	101,634,376	96,703,390	4,930,986	5.1
일 반 회 계	81,682,404	78,497,624	3,184,780	4.1
특 별 회 계	19,951,972	18,205,766	1,746,206	9.6
의료보호기금	6,838,526	5,623,800	1,214,726	2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504,611	504,611	-	-
주 차 장	2,803,964	2,272,484	531,480	23.4
주거환경개선사업	660,666	660,666	-	-
장립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9,047,930	9,047,930	-	-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96,275	96,275	-	-

4. 일 반 회 계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1,682,404	100	78,497,624	100	3,184,780	4.1
지 방 세	19,089,224	23.4	19,980,019	25.5	△890,795	△4.4
세 외 수입	20,293,205	24.8	20,546,802	26.2	△253,597	△1.1
경상적세외수입	10,483,533	12.8	10,986,531	14.0	△502,998	△4.5
임시적세외수입	9,809,672	12.0	9,560,271	12.2	249,401	2.6
조정교부금	19,547,551	23.9	17,974,551	22.9	1,573,000	8.8
보 조 금	21,502,424	26.3	18,746,252	23.9	2,756,172	14.8
국고보조금	8,791,649	10.8	8,480,831	10.8	310,818	3.7
시비보조금	12,710,775	15.6	10,265,421	13.1	2,445,354	24.0
지 방 채	1,250,000	1.5	1,250,000	1.6	-	-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 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81,682,404	100	78,497,624	100	3,184,780	4.1
일반행정	25,248,717	30.9	25,538,419	32.5	△289,702	△1.1
사회개발	35,159,272	43.1	34,474,175	43.9	685,097	2.0
경제개발	18,249,446	22.3	15,422,231	19.6	2,827,215	18.3
민방위비	232,284	0.3	231,221	0.3	1,063	0.5
지원 및 기타경비	2,792,685	1.0	2,831,578	1.1	△38,893	△4.6

○ 성질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81,682,404	100	78,497,624	100	3,184,780	4.1	
경상경비	소 계	35,202,169	4.1	35,300,006	44.9	△97,837	△0.3
	인건비	18,024,284	22.1	17,869,131	22.7	155,153	0.9
	관성운영비	1,053,240	1.3	1,063,830	1.3	△10,590	△0.1
	경상적경비	16,124,645	19.7	16,367,045	20.8	△242,400	△1.5
사업예산	소 계	42,230,530	51.7	38,900,120	49.5	3,330,410	8.6
	국고보조사업	13,711,844	16.8	13,001,065	16.5	710,779	5.6
	시비보조사업	12,019,849	14.7	9,641,369	12.2	2,378,480	24.7
	자체사업	16,498,837	20.2	16,257,686	20.7	241,151	1.5
채무상환	소 계	2,000,060	2.5	2,000,060	2.5	-	-
	지방채상환	549,060	0.7	549,060	0.7	-	-
	채무부담행위상환	1,451,000	1.8	1,451,000	1.8	-	-
예비비등	소 계	2,249,645	2.7	2,297,438	2.9	△47,793	△2.1
	예비비	795,463	0.9	834,356	1.0	△38,893	△4.7
	기타	1,454,182	1.8	1,463,082	1.8	△8,900	△0.6

○ 품 목 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1,682,404	100	78,497,624	100	3,184,780	4.1
인 건 비	18,512,874	22.7	18,388,061	23.4	124,813	0.7
물 건 비	12,990,517	15.9	13,193,710	16.8	△203,193	△1.5
이 전 경 비	22,829,343	28.0	22,871,022	29.2	△41,679	△0.1
자 본 지 출	24,315,333	29.8	20,971,601	26.7	3,343,732	16.0
용자 및 출자	-	-	-	-	-	-
보 전 재 원	450,000	0.5	450,000	0.6	-	-
내 부 거 래	340,712	0.4	340,712	0.4	-	-
예비비 및 기타	2,243,625	2.7	2,282,518	2.9	△38,893	△1.7

○ 주요 증감 내용

- 필수경비 _____ 838백만원
- 경상사업 _____ 118백만원
- 물품구입비 _____ 58백만원
- 투자사업비 _____ 3,415백만원
- 예산절감 _____ △1,205백만원
- 예비비 _____ △39백만원

○ 명시이월사업내역 _____ 13건 4,672,149천원

- 괴정2동 M마트 ~ 한나모자원 간 도로 개설 _____ 995,956천원
- 정신 요양 시설 기능보강 _____ 898,656천원
- 감천시장 ~ 천마산 간 산복도로 개설 _____ 695,815천원
- 사하 여성회관 건립 _____ 504,051천원

- 장림 우체국 ~ 경찰기동대 간 도로 개설 ————— 372,320천원
- 신평 초교 주변 도로 개설 ————— 365,000천원
- 장림 1 동사 신축 ————— 281,895천원
- 선영 어린이집 신축 ————— 185,856천원
- 이화 어린이집 신축 ————— 185,851천원
- 전자 주민 카드 사업 ————— 129,193천원
-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 토지 배상————— 28,692천원
- 행정 대 집행 손해 배상 ————— 20,000천원
- 개별지가 조사 관련 수용비 ————— 8,864천원

5.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계	경 상 적 세외수입	임 시 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계	예 산 액	18,690,420	7,837,192	2,836,248	5,409,924	2,607,056
	기정예산	16,944,214	7,854,230	2,281,730	4,479,528	2,328,726
	증 감 액	1,746,206	△17,038	554,518	930,396	278,330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6,838,526	800	20,746	5,409,924	1,407,056
	기정예산	5,623,800	800	14,746	4,479,528	1,128,726
	증 감 액	1,214,726	-	6,000	930,396	278,330
주 차 장	예 산 액	2,803,964	20,000	2,783,964		
	기정예산	2,272,484	5,500	2,266,984		
	증 감 액	531,480	14,500	516,980		
장림유수지 이 설	예 산 액	9,047,930	7,816,392	31,538		1,200,000
	기정예산	9,047,930	7,847,930	-		1,200,000
	증 감 액	-	△31,538	31,538		-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계	예산액	18,690,420	352,240	17,226,254	1,111,926
	기정예산	16,944,214	361,880	15,867,263	715,071
	증감액	1,746,206	△9,640	1,358,991	396,855
의료보호 기 금	예산액	6,838,526		6,830,844	7,682
	기정예산	5,623,800		5,608,254	15,546
	증감액	1,214,726		1,222,590	△7,864
주차장	예산액	2,803,964	350,720	1,349,000	1,104,244
	기정예산	2,272,484	360,360	1,349,000	563,124
	증감액	531,480	△9,640	-	541,120
장립유수지 이 설	예산액	9,047,930	1,520	9,046,410	-
	기정예산	9,047,930	1,520	8,910,009	136,401
	증감액	-	-	136,401	△136,401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총괄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1,645,376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682,404천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9,951,97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1,682,404천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40,632,429천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1,049,975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9.7%이며

○ 기정예산과 대비해보면 지방세가 890,795천원으로 4.4%, 세외수입이 253,597천원으로 1.1%가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1,573,000천원으로 8.8%, 국·시비보조금이 2,756,172천원으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와 국가 경제위기에 따라 징수액의 저조로 인하여 조치한 사항이며

○ 재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한 것은 96년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으로 재정운영 및 국토 대청결 운동 등 주요 행정 실적평가 결과 입상에 따른 그 상 사업과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확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 세출분야

○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1,682,404천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248,717천원, 사회개발 35,159,272천원, 경제개발 18,249,446천원, 민방위비 232,284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792,68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성질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5,202,169천원, 국·시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42,230,530천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상환 등 채무상환 2,000,060천원, 예비비등이 2,249,645천원이며

○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8,512,874천원,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등 물건비가 12,990,517천원 보상금, 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 22,829,343천원,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자본지출 24,15,333천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 450,000천원 적립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340,712천원, 반환금, 예비비등이 2,243,62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와 기정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한 것은 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사업비의 정산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금회 추경시 경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 컴퓨터 구입 등 행정 전산장비 보강 사업 50백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은 행정실적 심사 결과 그 시상금으로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조치한 내용이며

○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괴정2동 M마트 ~ 한나모자원간 도로개설, 감천시장 ~ 천마산 간 산복도로 개설사업 등은 특별 교부세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시행에 있어 완벽한 준비와 추진으로 차질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으며

○ 기타의 특정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순수 구비로 시행할 일부 투자사업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시점인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 보기 어려운 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에 시행치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3건에 4,672,149천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겠으나 당초 계획시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정기예금이자,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주정차 단속원 직급보조비와 예비비등으로 가감 정리 하였으며

○ 장림 유수지 이설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36,401천원을 장림 유수지 주변 도로 정비 공사비로 계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수정안의 요지(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택위원)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7년 12월 23일 이수택 위원외 9인 발의

나. 수정이유

세입분야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민간 수탁공사 잡수입은 세출편성과 상이하게 편성되어 별도 세입추계에 대한 규명이 수반되며, 세출분야에 있어 우수건축물 시상보상금은 집행과 추경편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삭감 수정

다. 주요골자 : 별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 내역표 참조

라.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수정의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 원안의결

첨부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내역(삭감) 조서 1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삭감요구내역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액		조 정 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비고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총 계				191,049				
임 시 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1,361,049	161,049		1,200,000	도로굴착 원인지 부담금 (경정 1,361,049-기정1,000,000 = 361,049) ⇒추가증 361,049를 200,000으로 수정 경정 1,200,000-기정1,000,000=200,000	P24
	잡수입	기타잡수입	880,000	30,000		850,000	민간수탁공사 (경정 880,000-기정 850,000=30,000) ⇒ 추가증 30,000을 0으로 수정	P26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액		조 정 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비고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총 계				191,049				
주택 및 지역사회	주택사업	건축지도 (보 상 금)	7,000		1,200	5,800	우수건축물 시상 경정 7,000 - 기정 2,900 = 4,100 ⇒ 추가증 4,100을 2,900으로 조정	P236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795,463	189,849		605,614	예비비 경정 795,463-기정834,356=△38,893 ⇒수정산출내역 795,463-191,049(세입삭감분) +1,200(세출삭감분) = 605,614 경정 605,614-기정 834,356 = △228,742	P74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 원안의결